

『구미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- 임대사업자와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공무원임대주택에 대한 도시계획세 면제규정을 추가하고,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신설하며
- 사업소세가 폐지되어 주민세 및 지방소득세로 변경됨에 따른 세목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-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공무원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한 도시계획세를 면제함(안 제12조)
-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2010년 12월 31일까지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함(안 제15조의2)
- 사업소세가 폐지되어 주민세 및 지방소득세로 변경됨에 따른 세목 명칭 변경(안 제18조, 안 제19조, 안 제20조)

4. 참고사항

-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

-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74조제1항제2호
- 경상북도 세정과-11259(2009.12.02)호 시세 감면조례 표준안(행정안전부)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행정안전부의 「2010년도 감면조례 표준안 일부 수정안(임대주택에 대한 감면)」 및 「종전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차로 분류 변경된 자동차에 대한 감면조례 표준안」에 따라 현행 시세감면 규정을 개선·보완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임

○ 주요 내용은

-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의 「공무원연금법시행령」 규정에 의한 공무원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 도시계획세를 면제함
-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 변경된 자동차(무쏘 픽업, 코란도밴 등)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신설함
- 사업소세가 폐지되어 주민세 및 지방소득세로 변경됨에 따른 세목 명칭을 변경함

○ 검토결과

-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의거 과세불균형을 해소하고 생계형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등 서민경제를 지원하기 위하여 감면규정을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음